

#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

(박춘희 의원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311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: 2024년 9월 2일

발 의 자 박춘희 의원

찬 성 자 남진삼, 김광성, 심현정의원

## 1. 제안이유

평창군민의 재능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조례안의 목적 및 기본이념(안 제1조~제2조관련)
- 재능나눔의 정의(안 제3조 관련)
- 군수의 책무(안 제4조 관련)
- 재능나눔 활성화 사업 및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(안 제5조 관련)
- 공적이 뛰어난 개인 등에 포상(안 제6조 관련)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)
- 입법예고 : 2024. 8. 13. ~ 9. 2.(20일간) 의견 없음.

라. 집행기관 의견수렴 : 2024. 8. 5.~ 8. 12. 아래표 참고.

| 원안  | 수정안(행정담당관)  | 의회의견       |
|---|---|------------|
| <p><b>제5조(사업추진)</b> 군수는 재능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</li> <li>2. 다양한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</li> <li>3. 재능나눔 관련 단체의 발굴·육성·지원 사업</li> <li>4.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</li> </ol> | <p><b>제5조(사업추진)</b> ① 군수는 재능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</li> <li>2. 다양한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</li> <li>3. 재능나눔 관련 단체의 발굴·육성·지원 사업</li> <li>4.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</li> </ol> <p>② <u>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「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(사유 : 재능나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라고 보기 어려워,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.<br/>따라서, 제5조제2항과 같이 재능나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 평창군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함.)</p> | <p>수 용</p> |
| <p><b>제6조(재능나눔사업의 위탁)</b>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재능나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  | <p>삭제</p>   |            |

##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평창군민의 재능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본이념)** 이 조례는 평창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의 자발적인 재능나눔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1. 사회의 다변화·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치유
2.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
3.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

**제3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재능나눔”이란 개인,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, 경험,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률 분야 : 법무, 노무, 세무, 행정 등
2. 의료 분야 : 의료, 보건, 건강관리 등
3. 문화예술 분야 : 공연, 전시, 연주, 행사 등
4. 전문기술 분야 : 건축, 토목, 전기, 디자인, IT기술 등
5. 사회복지 분야 : 보육, 상담, 간병, 가사지원 등
6. 그 밖의 재능나눔이 필요한 분야

**제4조(군수의 책무)**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군민의 자발적인 재능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나눔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사업추진)** ① 군수는 재능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
2. 다양한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
3. 재능나눔 관련 단체의 발굴·육성·지원 사업
4.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「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6조(포상)** 군수는 재능나눔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,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평창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관계법령】

###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제5조(사업추진) ① 군수는 재능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
2. 다양한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
3. 재능나눔 관련 단체의 발굴·육성·지원 사업
4.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「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2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 4. 작성자

|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| 평창군의회 박춘희의원     |
| 연락처 | (033) 330 -2502 |